[자활서식 6호] (자활사업실시기관 → 시·군·구)

자활사업 위탁결과 통보서

연번	성명	주민등록 번 호	주소	조건제시내용			비고 (의견)
				사업명	사업내용	실시기간	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, 귀 기관에서 위탁 의뢰한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보합니다.

2015년 월 일

자활사업실시기관명 :

기관주소 :

전화번호 :

담 당 자 : (서명 또는 날인)

사업주명 : (서명 또는 날인)

성북구청장 귀하